

고성군원로복지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

의안번호	730
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1. 12. 3
제출자 : 고성군수

1. 제정이유

노인여가시설인 노인복지회관의 신축에 따라 복지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복지관의 명칭과 업무에 관한 규정(안 제2·3조)
- 나. 시설의 설치(안 제4조)
- 다. 이용범위와 이용제한규정(안 제6·7조)
- 라. 위탁 운영관리에 관한규정(안 제8조)
- 마. 위탁의 정지 및 취소(안 제10조)
- 사. 손해배상에 관한규정(안 제11조)
- 아. 복지관의 사용허가 및 보조에 관한규정(안 제12·13조)

3. 참고사항

- 근거법령 : 노인복지법 제37조
- 입법예고 : 결과 의견내용 없음

4. 본 문

- 불임과 같음

고성군노인복지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(안)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고성군(이하 “군”이라 한다)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자주적인 활동으로 지역사회발전과 건전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노인복지관(이하“복지관”이라 한다)을 설치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명칭 및 위치) ① 노인복지법 제37조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 시설인 노인복지회관의 명칭을 “노인복지관”이라 한다.

② 복지관의 위치는 고성군 고성읍 대독리 5-17번지에 둔다.

제3조(업무) 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운영한다.

1. 노인의 후생복지증진에 관한 사업
2. 노인을 위한 상담 및 취업 알선
3. 노인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및 건강증진사업
4.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4조(시설) ① 복지관에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두고 노인복지를 위하여 활용한다.

1. 사무실
2. 상담실
3. 체력단련실, 물리치료실
4. 경로식당
5. 할아버지, 할머니 방
6. 소강의실
7. 기타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시설

② 복지관에는 불우노인을 낮동안 복지관에 입소시켜 보호하는 탁노소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제5조(공무원)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다.

제6조(이용범위) 고성군 주민 60세 이상의 노인은 누구나 이 회관을 이용할 수 있다. 다만, 군수가 질서유지 등으로 인한 이용제한 사유가 있을 경우 그 수를 제한 할 수 있다.

제7조(이용제한)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시설물의 사용 또는 이용을 거부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.

1. 전염병 환자
2. 소행이 불량한 사람
3. 기타 복지관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람

제8조(운영관리) ① 복지관은 고성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가 운영·관리한다. 다만,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노인단체에 위탁·관리하게 할 수 있다.

② 복지관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(이하 “수탁자”라 한다)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.

③ 복지관의 위탁운영 기간은 3년으로 한다. 다만,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만료 30일전에 신청하여 3년 단위로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 수탁자는 복지관의 운영에 있어서 군수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.

제9조(시설물변경금지)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관의 수탁자는 군수의 허가없이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

제10조(위탁의 정지 및 취소) ① 수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군수는 그 위탁관리를 정지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1. 이 조례에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
 2. 시설의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목적 외에 사용할 때
 3.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고의 또는 과실로 손상 멸실하였을 때
 4. 기타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-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관리가 정지 및 취소되었을 때 수탁자가 입은 피해 및 손해에 대하여는 군수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
제11조(손해배상) 복지관시설의 수탁자 또는 이용자가 시설 및 비품등을 망실, 훼손, 기타의 행위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탁자 또는 이용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를 하거나 배상하여야 한다.

제12조(사용허가) ① 복지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② 노인단체의 조직활성화를 위해 시설의 일부를 사무실로 사용허가 할 수 있으며, 사용허가 신청은 제8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

제13조(보조) 군수는 수탁자에게 복지관의 관리유지에 필요한 경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.

제14조(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1호서식]

고성군노인복지관 위탁운영 신청서

시설명	
위탁기간	
위탁면적	
용도	

고성군노인복지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자 : 법인(단체)명

소재지 :

대표자 :

- 첨부 : 1. 사업계획서 1부
2. 법인(단체)등록서 1부

고성군수 귀하